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변경내용은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의 위치		
	벌크로리 수량(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8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4.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등록 및 변경등록: 1만5천원
	변경등록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록 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